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(21년 11월) 및 격리면제서
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

1. 관련: 중앙사고수습본부-33339(2021.10.20.), 외교부 영사서비스과
-58796(2021.10.21.)

2. 중수본에서 선정한 **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**(21년 11월, 129개국) 및 **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시 양식 작성 관련 유의사항(붙임5)**을 안내드리니, 업무에 참고
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(21년 11월): **129개국(붙임2 참조)**

나. 적용시기 : '21. 11.1. ~ 11.30, 매월 선정

- 중요사업목적: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접수 기준
- 학술, 공익적 목적: 심사부처 접수기준
- 공무국외출장, 인도적목적(장례식참석): 재외공관 접수기준

붙임 1. [중수본공문]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안내(21년 11월)
2. 211019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(21년 11월)
3. (참고) 21090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
4. 210913 [교육부]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
5. [외교부공문]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. 끝.

교 육 부 장



고등교육기관전체, 각실과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, 국립대병원

주무관

김신혜

서기관

정희권

학생건강정책
과장

전결 2021.10.25.

조명연

협조자

시행 학생건강정책과-8904 ((2021.10.25.)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14동 교육부 (어진 / www.moe.go.kr
동)

전화 044-203-6814 전송 044-203-6438 / shin8352@korea.kr / 비공개